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언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835 발의연월일: 2025. 1. 24.

발 의 자:이언주·박민규·민병덕

허성무 · 소병훈 · 정진욱

김현정 · 이광희 · 이개호

이상식 · 이원택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「상법」은 이사에게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를 부과하고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과하고 있음.

그러나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이사의 행위가 회사에 영향은 미치지 않으면서 지배주주만을 위한 행위를 통해 일반주주가 피해를 보는 사 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주권상장법인의 이사에게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부여하고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주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한편, 그 손해배상을 위한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고 이사가 모든 주주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(안 제165조의21 및 제165조의22 신설).

법률 제 호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편제3장의2에 제165조의21 및 제165조의2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65조의21(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등) 주권상장법인의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 행하여야 한다.
- 제165조의22(이사의 주주에 대한 책임) ①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주주에 대한 임무를 게을 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주주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 임이 있다.
 - ② 「상법」 제399조제2항·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.
 - ③ 이사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165조의21(이사의 주주에 대한
	충실의무 등) 주권상장법인의
	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
	따라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
	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.
<u><신 설></u>	제165조의22(이사의 주주에 대한
	책임) ① 이사가 고의 또는 과
	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
	행위를 하거나 주주에 대한 임
	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
	는 주주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
	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
	② 「상법」 제399조제2항・제
	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
	준용한다.
	③ 이사는 제1항에 따른 손해
	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
	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
	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
	<u>야 한다.</u>